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4 선고 2020가단5144805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 손성락

피고1. B

2. C

변론 종결2020. 10. 7.

판결 선고2020. 11. 4.

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41,379,54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6.부터 2020. 4. 2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20. 9. 14.까지는 연 7.1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B는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피고 C은 피고 B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48,000,000원을 한도로 위 1항 기재 돈을 지급하라1) .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과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피고 B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이 금전채권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채권질권의 효력은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지연손해금 등과 같은 부대채권에도 미치므로 채권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을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는 자기채권액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직접 추심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40668 판결 참조), 피고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장찬

별지

1)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수수된 임대차보증금의 수액 자체를 다룰 수는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임대인은 별소로 그 임대차보증금에서 아직 공제되지 아니한 연체차임 등의 지급을 구하거나 위 연체차임 등의 채권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다른 채권과 상계를 할 수도 있음은 물론, 위와 같은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다 하여 그 임대차보증금의 성질이 달라진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아직 반환하지 아니한 임대차보증금에서 위

연체차임 등을 공제하고 이를 반환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1398 판결).